

영업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15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:)	
영업장	명칭(상호)	
	주소	(전화번호:)
	신청업종	[] 동물전시업 [] 동물위탁관리업 [] 동물미용업(일반, 자동차 이용) [] 동물운송업 * 다수 영업의 등록 신청 시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필요

「동물보호법」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인력 현황 2.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3. 사업계획서 4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만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 2.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(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3. 자동차등록증(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

-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등록 내용(영업의 등록 및 등록번호, 업체명, 전화번호, 소재지 등)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전시업, 동물위탁관리업, 동물미용업,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“[]”란에 √ 표시를 하고, ()안의 영업의 세부 범위에 표시합니다.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등록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,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.

처리절차

